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20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2617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00. 6. 27. 500만 원을 변제기 2002. 6. 26., 이자율 연 13.4%,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1. 4. 10. 1,0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9., 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01. 7. 9. 790만 원을 변제기 2004. 7. 8., 이자율 연 12.9%,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 2001. 8. 20. 390만 원을 변제기 2002. 8. 19.,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각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505호로 잔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1. 'C은 원고에게 25,711,955원과 그 중 19,069,412원에 대해서는 2003. 3. 29.부터 2007. 4. 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900,000원에 대해서는 200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28.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11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2. 'C은 원고에게

25,711,955원 및 그 중 22,969,412원에 대하여 200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7. 9. 2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E이 2018. 12. 29.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가 3/13 지분, 자녀들인 F, G, H, I, C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와 C을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2019. 1. 2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

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C이 2001년경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 1억 4,3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퇴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E이 위 무렵 적금을 해약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회사에 1억 1,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C이 E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의 실제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이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 실질이 상속의 포기과 동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의 포기과 구체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법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취지와 법적 성질, 형식과 내용 등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남편인 망 E이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일 뿐 자녀들은 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녀들은 이를 분할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 피고가 단독 상속한 것이고, 피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1971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와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

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운신

판사 조미옥

판사 김미리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109m².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4.55m²

2층 44.63m²

3. 전라남도 영광군 답 2780m²

4. 전라남도 영광군 답 855m²

- 이 상 -